



의료보험GUIDE

(IV)

의료보험 진료비 산정에 따른 참고 사례등을 계속적으로 수록할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

의료보호(부조) 진료수가 개정(보사부고시 제 88-99호(88. 12. 29) 내용을 다음과 같이 대비표를 수록하오며, 의료보호 진료수가 청구서식(2종류)을 수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988, 1989년 의료보호 진료수가기준 개정대비표

1989. 1.

구 분	1988. 1. 1시행내용	1989. 1. 1개정 시행내용	비 고
보사부고시 1. 1차 진료기관의 수가기준	제88-2호(88. 1. 8) 1) 일반진료기관 1일~3일까지 2,200원 4일이후 원 1일 1,100	제88-99호(88. 12. 29) 1) 일반진료기관 의과 1~3일까지 2,770원 (25.9%) 4일이후 1,390원 (26.4%) 치과 1~3일까지 2,940원 (33.6%) 4일이후 1일 1,390원 (26.4%)	치과의원 및 보건소, 보건지소: 치과 재 료대 170원추가(1일 ~3일까지)되어 740 원 인상 조정됨.
	2) 보건소 및 보건지소 1일~3일까지 1일 1,260원 4일이후 1일 630원	2)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과 1~3일까지 1,590원 (26.1%) 4일이후 1일 800원 (26.9%) 치과 1~3일까지 1일 1,760 원 (39.7%) 4일이후 1일 800원 (26.9%)	
2. 2차 진료기관의 수가기준	가. 진료수가 및 약가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수가의 88%에 해 당하는 금액 나. 급식비 및 안치료 급식비: 1일 2,300원 안치료: 1일 2,500원	가. 진료수가 및 약가 의료보험수가의 94%에 해 당하는 금액 나. 급식비 및 안치료 급식비: 1일 2,500원 (8.6%) 안치료: 1일 2,500원 (0%)	6% 인상 (초. 재진료에 적용) 급식비 1일 200원 인상 안치료 동일

